

농수산물 수출업체 FTA원산지증명 실무적용 안내

[특 집]

I. FTA 추진현황	3
II. FTA 원산지결정기준 적용방법	3
III.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흐름도	14
IV. 원산지확인서	17
V. 원산지소명서	20
VI. 원산지보관대상 서류	22
VII.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원산지 결정예시	24

요 약

-  최근 우리나라와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하여 발효되는 국가가 늘어남으로써 체결국간 상호시장의 진입장벽이 낮아져 교역증가가 전망됨
-  농수산물식품 부문에도 체결국 시장에 대한 수출확대의 기회이자 국내 시장 잠식에 대한 위협이기도 한 양면성을 지니고 있음
-  FTA를 통해 상호 시장접근이 유리해졌으나 실질적인 관세인하 수혜를 보는 원산지 증명 등이 실무적으로 까다롭고 복잡하여 초기 적용에 애로를 가지고 있는 상황임
-  FTA체결 국가별, 품목별 원산지증명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중소 수출업체는 입증서류 등에 대한 사전,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
 - ※ 한미FTA 경우, 대한상공회의소 71.5% 중소기업중앙회 88.3%가 ‘어려움’으로 조사됨
 - ※ 우리공사(aT) 수출업체 설문조사결과 ‘방문컨설팅필요’함이 95.0%로 나타남
-  따라서, 공사에서는 FTA원산지 증명에 대한 이해도를 넓히기 위해 지역별 순회 교육, 전문교육 과정을 마련하여 실시하는 한편, aT 포커스誌 를 통해서도 FTA원산지증명 제도를 요약하여 널리 알리고자 함
 - ※ 더 자세한 내용은 KATI(농수산물무역정보 사이트)/무역정보/발간책자/ ‘FTA활용 농수산물식품 수출핸드북’을 참조
-  농수산물식품 수출업체는 각종 원산지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사의 수출품목별로 FTA체결 수출대상국에 맞는 원산지증명을 자체 정립하고 관리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됨
 - ※ 관세청, FTA무역종합지원센터, aT기업지원센터 등에서 지원하는 원산지관리 프로그램, 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 등의 적극 활용이 요구됨
 - ※ 중소기업 원산지관리 전산시스템 **FTA-FASS** 및 **FTA-korea** 이용

I FTA 추진현황



II FTA 원산지결정기준 적용방법



1

품목분류



품목분류란 ??

물품을 규정된 품목번호 (HS CODE, 세번)에 분류하여 해당 물품에 번호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품목번호 (HS CODE, 세번) 란 ??

세계관세기구가 중심이 되어 체결한 HS 협약에서 상품별로 부여한 코드. 6단위까지는 국제적으로 공통된 코드를 사용하나, 7단위 이하는 각 국가별로 세분하여 각기 달리사용



우리나라는 10단위까지 세분화 (HSK 2203.00.0000 : 맥주)

일본 9단위, EU • 미국 • 중국 8단위



2

품목분류 및 원산지결정기준

품목분류와 원산지결정의 관계



원산지결정의 선행 조건

원산지결정을 할 경우 가장 먼저 품목분류를 통하여 해당 제품의 품목번호 (HS CODE, 세번)가 결정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음.



품목에 따라 원산지 결정기준이 상이

같은 협정 안에서도 각각의 품목번호에 따라 원산지 결정기준이 대부분 상이함.



품목분류의 오류는 원산지 오류로 직결

품목분류의 정확성을 위해 품목분류사전심사 및 HS 품목번호확인 신청제도를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음.

3 FTA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 결정기준이란?

물품의 원산지를 해당 국가로 인정해주는 기준으로 FTA 원산지 결정기준은 협정마다 품목별로 그 기준이 다르다.

일반적인 원산지 결정기준

- ① 원산지 결정기준은 크게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변형기준으로 구분된다.
- ② 완전생산기준 (WO : Wholly Obtained Criterion) 은 당해물품 전부를 생산, 가공, 제조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이다.

실질적 변형기준

실질적변형기준은 세번변형기준, 부가가치기준, 주요공정기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4 세번변경기준

세번변경기준이란?

- ① 비원산지재료에서 제품으로의 변경부분에 대해 실질적인 변형을 세번 (HS CODE) 변경으로 판정하는 방식 (2단위, 4단위, 6단위 변경기준)
- ② 국제적 통일 상품분류방식인 류, 호, 소호체계 내에서 변경이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는 방식이다.

세번변경기준의 구분

- ① HS 2단위(류) 변경기준 (CC : Change of Chapter)
- ② HS 4단위(호) 변경기준 (CTH : Change of Tariff Heading)
- ③ HS 6단위(소호) 변경기준 (CTSB : Change of Tariff Sub Heading)

협 정	원산지결정기준 (세번변경기준)	표 시
한-칠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한-싱가포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제품 에서 제7318호에 해당하는 제품 으로 변경된 것	CTH
한-아세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한-EFTA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CTH
한-인도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35%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CTSH + RVC
한-EU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7318호의 것은 제외한다.	CTH
한-미	다른 호에 해당하는 제품 (제7318호의 것은 제외한다.) 에서 제7318호에 해당하는 제품 으로 변경된 것.	CTH
한-페루	다른 호에 해당하는 제품 에서 변경된 것 또는 역내부가가치포함 비율이 50%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CTSH or RVC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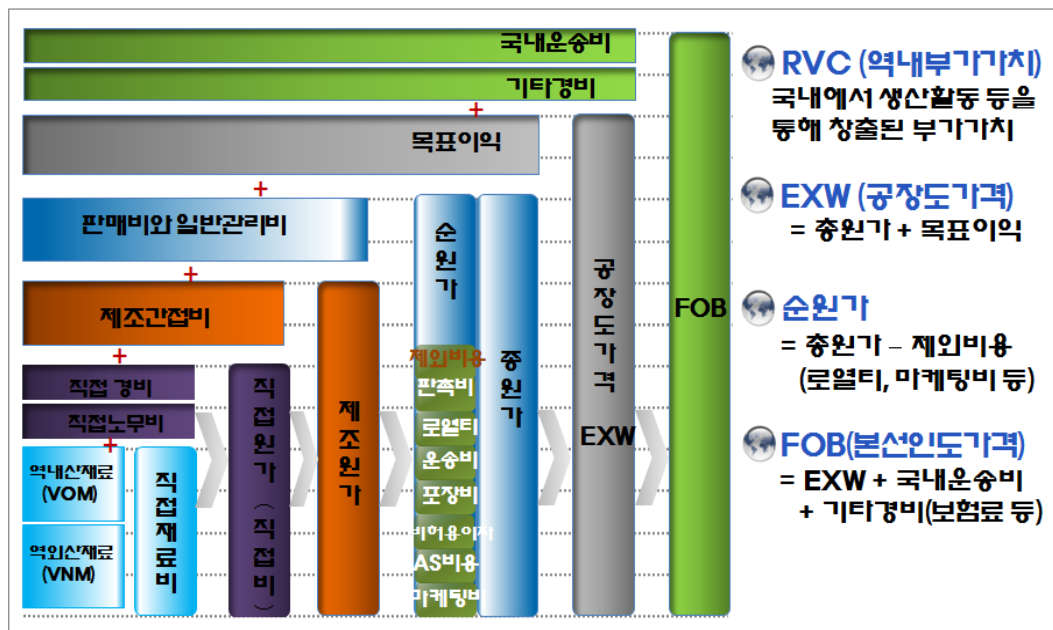
부가가치기준이란?

부가가치기준은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경우 가공과정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부가가치가 역내(국내)에서 발생해야만 원산지제품으로 인정하는 기준 (공제법, 집적법, 순원기법, MC법)

구분	한-칠레	한-싱	한-아세 안	한-EFTA 한-EU	한-인도	한-미	한-페루
부가가치 공식	공제법/ 집적법	공제법	공제법/ 집적법	MC방식	공제법	공제법/ 집적법/ 순원기법	공제법/ 직접법
부가가치 수준	공제법45% 집적법 30%	45~55%	공제법 40%	30~60% 이하	35%	55% 35%	RVC (35~50%)
제품기준 가격	조정가격 (FOB)	조정가격 (FOB)	조정가격 (FOB)	조정가격 (EXW)	조정가격 (FOB)	조정가격 (FOB)	조정가격 (FOB)

7

제조원가 구성요소



8

공제법

공제법 (BD : Build – Down Method)

상품가격(조정가격)에서 비원산지 재료가격을 공제하여 조정가격으로 나눈 비율

$$\text{부가가치비율(RVC)} = \frac{\text{조정가격} - \text{비원산지 재료가격}}{\text{조정가격}} \times 100$$

- 조정가격**: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산정된 가격에서 선적 후 수입지까지 운임, 보험료 기타 서비스 비용들을 제외한 가격 (일반적으로 FOB가격, EU와 EFTA는 EXW가격)
- 비원산지재료가격**: 수입원재료 및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재료, 원산지를명재료를 말함.

공제법 (BD) 계산 예시

구분	금액 (단위: 원)
원산지재료비	20
비원산지재료비	55
노무비 및 기타비용	20
이윤	55
판매가격(납품가격)	100

$$\text{부가가치비율(RVC)} = \frac{100 - 55}{100} \times 100\% = 45\%$$

집적법 (BU : Build – Up Method)

원산지 재료가격을 상품가격(조정가격) 으로 나눈 비율

$$\text{부가가치비율(RVC)} = \frac{\text{원산지 재료가격}}{\text{조정가격}} \times 100$$

 **원산지재료가격** : 원산지재료는 해당 상품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된 재료 중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여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되는 재료를 말함.

 **FTA 원산지 기준에서는**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등의 증명서류가 있어야 원산지 재료로 인정 가능.

11

순원가법

 순원가법 (NC : Net-Cost Method)

:상품가격(순원가)에서 비원산지재료 가치를 공제하여 순원가로 나눈 비율
한-미 FTA에서 적용 (자동차 및 그 부품에 한정)

$$\text{부가가치비율(RVC)} = \frac{\text{순원가} - \text{비원산지 재료가격}}{\text{순원가}} \times 100$$

 **순원가** : 총비용에서 공제비용을 제한 가격.

 **공제비용** : 판촉, 마케팅, 판매후 서비스, 로열티, 운송, 포장 및 허용범위를 벗어난
이자비용

12

역외산재료최대허용법

 역외산재료최대허용법 (MC : import Contents Method)

비원산지재료비에서 상품가격을 나눈 비율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한-EFTA,
한-EU FTA에서 사용

$$\text{비원산지 재료비율} = \frac{\text{비원산지 재료비}}{\text{공장도 가격}} \times 100$$

 **공장도 가격** : 제조자의 공장도 상품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 일반적으로 EXW 가격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수출 시 환급되는 내국세는 공장도 가격에서 공제

 **비원산지 재료비** : 일반적으로 CIF 가격, 알 수 없는 경우 생산국내 최초 확인 가격

가공공정기준

- 품목별로 주요한 생산공정이 수행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식
- 주로 세번변경이나 부가가치기준을 함께 충족시켜야 하는 경우가 많음

역내가공원칙

- 해당 물품의 생산공정이 역내에서 중단없이 수행되어야 하고, 일부라도 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않음(협정별 일부 예외 인정)

충분가공원칙(불인정공정)

- 역내에서 당해 물품의 실질을 변형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공정을 거쳐 생산된 물품에 한하여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 제도.

누적기준

- 원산지 결정시 상대방 국가에서 발생한 생산과정 투입요소를 자국에서 투입한 것과 합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

15

보충적 원산지기준

 최소기준

- 소량 생산된 비원산지재료가 원산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상품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

 중간재 규정

- 최종생산물품의 생산에 투입하기 위한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상품 생산자가 직접생산한 재료를 중간재라고 하며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중간재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는 원산지재료로 본다.

 대체가능물품

- 동종물질의 곡물, 원유 등과 같이 물품의 특성이 동일하여 원산지가 서로 다르더라도 상업적으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품 또는 재료

16

보충적 원산지기준

 간접재료

- 상품의 생산, 검사과정에 사용되지만 그 상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않은 물품 또는 설비,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재료
- 원산지결정시 간접재료비는 고려하지 않으나 한-칠레 FTA에서는 비원산지 재료라 하더라도 원산지재료로 간주.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 부분품에 대하여는 각각 원산지를 확인하여 결정하게 되나,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는 본체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원산지 결정시 제외하고 결정
- 부속품 등의 특례는 하나의 송품장에 의하여 함께 제공되고, 그 수량과 가치가 통상적인 수준인 범위내의 물품에 한정되어 적용됨.

발급 주체 • 증명서식 • 유효기간 등이 협정별로 상이함

구분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EU	한-아세안 한-인도	한-미국	한-페루
증명방식	자율증명	기관증명	자율증명	기관증명	자율증명	기관증명(5년간), 자율증명
증명주체	수출자	세관 / 지정기관	수출자	세관 / 지정기관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기관-한국:세관·상공회의소, 페루:동상공관부 자율-수출자
증명서식	양국 통일증명서식	양국 별도증명서식	송품장 신고방식	양국 통일증명서식	서식 없음	기관-통일증명 서식 자율-송품장신 고방식
유효기간	2년	1년	1년	6개월(아세안) 1년(인도)	4년	1년
사용회수	1인 사용인식(분할기능) ※ 한-미의 경우 증명일로부터 12월 이내의 포괄증명 가능 ※ 한-페루의 경우 발급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내 같은 수입자에 대한 동일한 상품의 복수선택에 적용 가능					

참고 협정별 원산지 증명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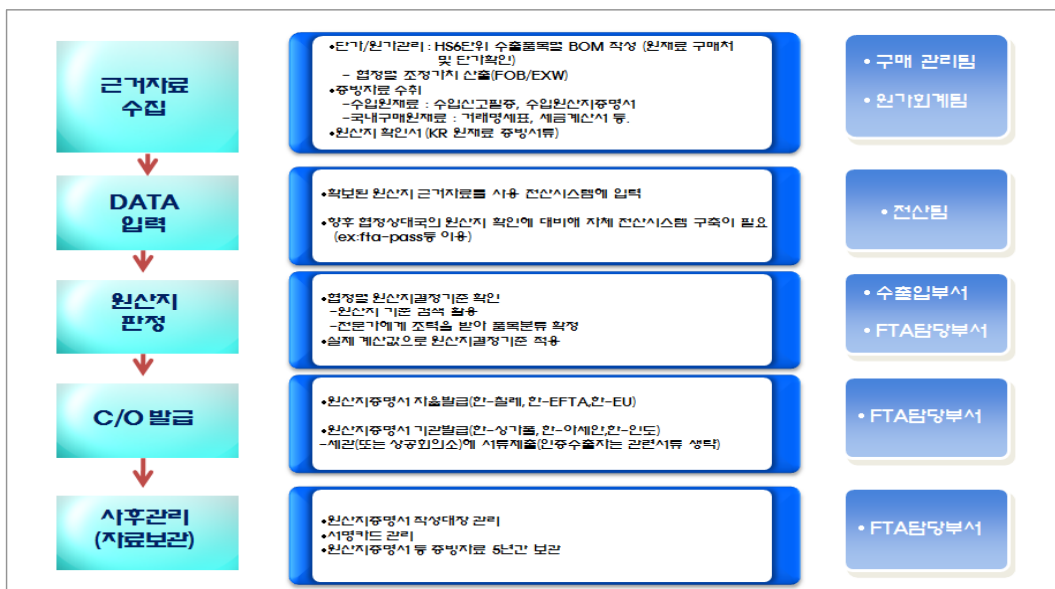


구분	한-칠레	한-아세안	한-인도	한-EFTA	한-EU	한-페루	한-미
발효일자	2004.4.1	2007.6.1	2010.1.1	2006.09.01	2011년 7월	2011.08.01	2012.03.15
원산지 결정기준	-품목별 기준 -BU30% 이상 -BD45% 이상	-품목별 기준 -RVC40% 이상 -CTH	-품목별 기준 -RVC35% 이상 + CTSH	-품목별 기준	-품목별 기준	품목별 기준 ...	-품목별 기준 -(BU,BD,NC)
일반적인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CTH..	CTH...	CC+RVC CTH+RVC CTSH+RVC	CTH MC	CTH MC	CTH...	CTH CTSH BU,BD,NC
제품 기준가격	조정가격 (FOB)	조정가격 (FOB)	조정가격 (FOB)	조정가격 (EXW)	조정가격 (EXW)	조정가격 (FOB)	조정가격 (FOB)
원산지 증명방식	자출발급	기관발급	기관발급	자출발급	자출발급 (인중수출자)	기관발급 & 자출발급	자출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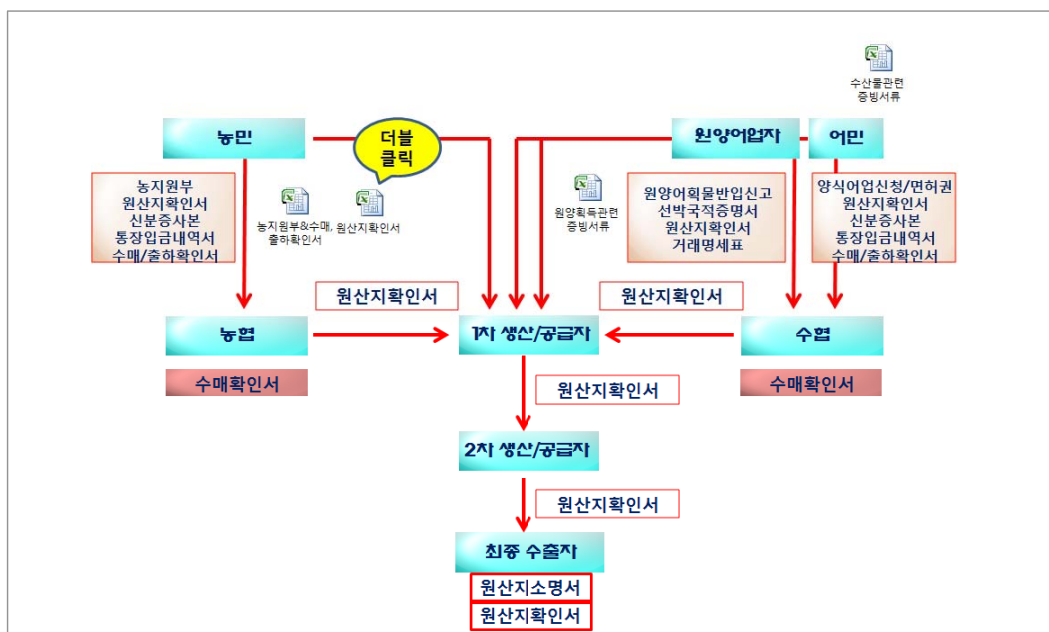
III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흐름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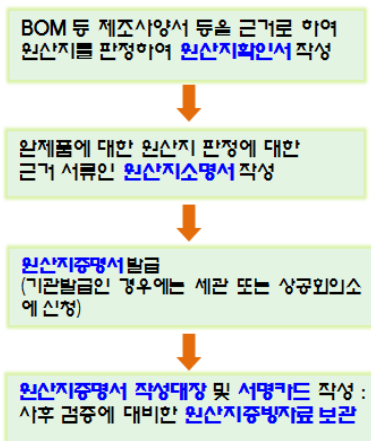


농 · 수산물 원산지증빙 절차



원산지소명서 등 발급절차

1. 원산지소명서 등 발급절차



2. 원산지 증빙자료 관리

- ◎ FTA 특별법 시행령 제 1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 중인 서류가 보관되어야 향후 원산지검증에 대비 할 수 있습니다.
- ◎ 인증을 받더라도 서류보관 규정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서류제출만 면제 됩니다.
- ◎ 증빙자료를 보관할 때에는 자체 전산시스템에 보관 또는 종이서류로 보관, PDF파일로 PC보관, 파일로 저장매체에 보관하는 방법등이 있습니다.

IV 원산지확인서

원산지확인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가 제조한 수출물품이 협정과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산지물품임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원산지증명서의 작성 등을 위하여 생산자가 작성·서명하여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서류.

원산지확인서는 국내에서 거래되는 원산지증명서(C/O)로 간주할 수 있다. 다만, 원산지확인서는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즉 생산자가 완제품을 공급하여 수출자는 수출만 행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서류이다.

원산지확인서 양식 및 작성방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0.12.31>

원산지 (포괄) 확인서

1. 수출자 (수출자) (주/국)		2. 생산자 (생산자) (주/국)	
3. 수출지 (수출지) (주/국)		4. 수입지 (수입지) (주/국)	
5. 수출물품의 품명 (수출물품의 품명) (주/국)			
6. 수출물품의 품명 (수출물품의 품명) (주/국)			
7. 수출물품의 품명 (수출물품의 품명) (주/국)			
8. 수출물품의 품명 (수출물품의 품명) (주/국)			
9. 수출물품의 품명 (수출물품의 품명) (주/국)			
10. 수출물품의 품명 (수출물품의 품명) (주/국)			
11. 수출물품의 품명 (수출물품의 품명) (주/국)			
12. 수출물품의 품명 (수출물품의 품명) (주/국)			
13. 수출물품의 품명 (수출물품의 품명) (주/국)			
14. 수출물품의 품명 (수출물품의 품명) (주/국)			
15. 수출물품의 품명 (수출물품의 품명) (주/국)			
16. 수출물품의 품명 (수출물품의 품명) (주/국)			
17. 수출물품의 품명 (수출물품의 품명) (주/국)			
18. 수출물품의 품명 (수출물품의 품명) (주/국)			
19. 수출물품의 품명 (수출물품의 품명) (주/국)			
20. 수출물품의 품명 (수출물품의 품명) (주/국)			
21. 수출물품의 품명 (수출물품의 품명) (주/국)			
22. 수출물품의 품명 (수출물품의 품명) (주/국)			
23. 수출물품의 품명 (수출물품의 품명) (주/국)			
24. 수출물품의 품명 (수출물품의 품명) (주/국)			
25. 수출물품의 품명 (수출물품의 품명) (주/국)			
26. 수출물품의 품명 (수출물품의 품명) (주/국)			
27. 수출물품의 품명 (수출물품의 품명) (주/국)			
28. 수출물품의 품명 (수출물품의 품명) (주/국)			
29. 수출물품의 품명 (수출물품의 품명) (주/국)			
30. 수출물품의 품명 (수출물품의 품명) (주/국)			
31. 수출물품의 품명 (수출물품의 품명) (주/국)			
32. 수출물품의 품명 (수출물품의 품명) (주/국)			
33. 수출물품의 품명 (수출물품의 품명) (주/국)			
34. 수출물품의 품명 (수출물품의 품명) (주/국)			
35. 수출물품의 품명 (수출물품의 품명) (주/국)			
36. 수출물품의 품명 (수출물품의 품명) (주/국)			
37. 수출물품의 품명 (수출물품의 품명) (주/국)			
38. 수출물품의 품명 (수출물품의 품명) (주/국)			
39. 수출물품의 품명 (수출물품의 품명) (주/국)			
40. 수출물품의 품명 (수출물품의 품명) (주/국)			
41. 수출물품의 품명 (수출물품의 품명) (주/국)			
42. 수출물품의 품명 (수출물품의 품명) (주/국)			
43. 수출물품의 품명 (수출물품의 품명) (주/국)			
44. 수출물품의 품명 (수출물품의 품명) (주/국)			
45. 수출물품의 품명 (수출물품의 품명) (주/국)			
46. 수출물품의 품명 (수출물품의 품명) (주/국)			
47. 수출물품의 품명 (수출물품의 품명) (주/국)			
48. 수출물품의 품명 (수출물품의 품명) (주/국)			
49. 수출물품의 품명 (수출물품의 품명) (주/국)			
50. 수출물품의 품명 (수출물품의 품명) (주/국)			
51. 수출물품의 품명 (수출물품의 품명) (주/국)			
52. 수출물품의 품명 (수출물품의 품명) (주/국)			
53. 수출물품의 품명 (수출물품의 품명) (주/국)			
54. 수출물품의 품명 (수출물품의 품명) (주/국)			
55. 수출물품의 품명 (수출물품의 품명) (주/국)			
56. 수출물품의 품명 (수출물품의 품명) (주/국)			
57. 수출물품의 품명 (수출물품의 품명) (주/국)			
58. 수출물품의 품명 (수출물품의 품명) (주/국)			
59. 수출물품의 품명 (수출물품의 품명) (주/국)			
60. 수출물품의 품명 (수출물품의 품명) (주/국)			
61. 수출물품의 품명 (수출물품의 품명) (주/국)			
62. 수출물품의 품명 (수출물품의 품명) (주/국)			
63. 수출물품의 품명 (수출물품의 품명) (주/국)			
64. 수출물품의 품명 (수출물품의 품명) (주/국)			
65. 수출물품의 품명 (수출물품의 품명) (주/국)			
66. 수출물품의 품명 (수출물품의 품명) (주/국)			
67. 수출물품의 품명 (수출물품의 품명) (주/국)			
68. 수출물품의 품명 (수출물품의 품명) (주/국)			
69. 수출물품의 품명 (수출물품의 품명) (주/국)			
70. 수출물품의 품명 (수출물품의 품명) (주/국)			
71. 수출물품의 품명 (수출물품의 품명) (주/국)			
72. 수출물품의 품명 (수출물품의 품명) (주/국)			
73. 수출물품의 품명 (수출물품의 품명) (주/국)			
74. 수출물품의 품명 (수출물품의 품명) (주/국)			
75. 수출물품의 품명 (수출물품의 품명) (주/국)			
76. 수출물품의 품명 (수출물품의 품명) (주/국)			
77. 수출물품의 품명 (수출물품의 품명) (주/국)			
78. 수출물품의 품명 (수출물품의 품명) (주/국)			
79. 수출물품의 품명 (수출물품의 품명) (주/국)			
80. 수출물품의 품명 (수출물품의 품명) (주/국)			
81. 수출물품의 품명 (수출물품의 품명) (주/국)			
82. 수출물품의 품명 (수출물품의 품명) (주/국)			
83. 수출물품의 품명 (수출물품의 품명) (주/국)			
84. 수출물품의 품명 (수출물품의 품명) (주/국)			
85. 수출물품의 품명 (수출물품의 품명) (주/국)			
86. 수출물품의 품명 (수출물품의 품명) (주/국)			
87. 수출물품의 품명 (수출물품의 품명) (주/국)			
88. 수출물품의 품명 (수출물품의 품명) (주/국)			
89. 수출물품의 품명 (수출물품의 품명) (주/국)			
90. 수출물품의 품명 (수출물품의 품명) (주/국)			
91. 수출물품의 품명 (수출물품의 품명) (주/국)			
92. 수출물품의 품명 (수출물품의 품명) (주/국)			
93. 수출물품의 품명 (수출물품의 품명) (주/국)			
94. 수출물품의 품명 (수출물품의 품명) (주/국)			
95. 수출물품의 품명 (수출물품의 품명) (주/국)			
96. 수출물품의 품명 (수출물품의 품명) (주/국)			
97. 수출물품의 품명 (수출물품의 품명) (주/국)			
98. 수출물품의 품명 (수출물품의 품명) (주/국)			
99. 수출물품의 품명 (수출물품의 품명) (주/국)			
100. 수출물품의 품명 (수출물품의 품명) (주/국)			

작성 방법	
번호	기재항목
1	발급번호
2	수출자
3	수출지
4	수출물품의 품명
5	수출물품의 품명
6	수출물품의 품명
7	수출물품의 품명
8	수출물품의 품명
9	수출물품의 품명
10	수출물품의 품명

원산지확인서 작성 예시

 BOM등 제조사양서 등을 근거로 원산지를 판정하여 원산지확인서 작성.

공 급 물 품 명 세 서

3.연번	4.품명·규격	5.적용대상 협정	6.품목번호 (HS 6단위)	7.원산지 결정기준	8.원산지기준 출적여부		9.원산지	10.원산지포괄확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출적	미출적		
01	RECEFFERL J. LUMINOUS (Y8012)	한-인도 (DEPA)	3810.90	CTSH+RVC35	[0]	[]	KR	
					[]	[]		
					[]	[]		
					[]	[]		
					[]	[]		
					[]	[]		
					[]	[]		

10. 원산지포괄확인기간

- 최초의 원산지확인서 작성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반복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그 반복사용기간을 적습니다.
- 원산지포괄확인기간을 적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원산지확인서로 봅니다.

원산지확인서 작성 예시

 제품 A 에 대한 협정별 원산지확인서 작성 사례

1. HS CODE 3810.90에 대한 원산지기준 확인.(FTA 포탈, 협정문 확인)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및 원산지결정기준

HS Code	품목명	기본세율	협정세율	연간쿼터 (톤)	원산지기준
381090000	Other		2011 : 0 모든년도보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일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일 것 (CTH)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RVC40%)

원산지확인서 작성 예시



공 급 물 품 명 세 서								
3. 연번	4. 품명 · 규격	5. 적용대상 협정	6. 품목번호 (HS 6단위)	7. 원산지 결정기준	8.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9. 원산지	10. 원산지포괄확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충족	미충족		
01	ABCDEFGH IJKLMNOPQRSTU (YWXVZ)	한-아세안	3810.90	CTH	[0]	[]	KR	
02	ABCDEFGH JKLMNOPQRSTU (YWXVZ)	한-EU	3810.90	CTH	[0]	[]	KR	
03	ABCDEFGH JKLMNOPQRSTU (YWXVZ)	한-칠레	3810.90	CTH	[0]	[]	KR	
04	ABCDEFGH JKLMNOPQRSTU (YWXVZ)	한-EFTA	3810.90	VAR(50)	[0]	[]	KR	
05	ABCDEFGH JKLMNOPQRSTU (YWXVZ)	한-싱가포르	3810.90	CTH	[0]	[]	KR	
06	ABCDEFGH JKLMNOPQRSTU (YWXVZ)	한-인도	3810.90	CTSH +RVC35	[0]	[]	KR	
					[]	[]		

원재료 원산지 결정 검토서

[illegible]



원산지소명서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판정하기 위하여 역내부가가치의 산정, 상품의 품목분류번호 및 그 상품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에 대하여 생산자가 작성한 신고서를 말함. 신고서는 지정된 권한있는 자, 일반적으로 회사의 이사 또는 회계담당자가 서명하여야 함. 수입자 또는 수출자가 상품의 생산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수입자 또는 수출자가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음. 위 규정에 불구하고, 생산자가 수입자 또는 수출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되는 것은 아님.

원산지소명서는 일반적으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하며, 수출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이유를 밝혀 설명하는 서류.

원산지소명서 양식 및 작성방법

[별지 제1호서식] (국문 알람)

원산지소명서				
1. 수출자	상 호 (대표인명)	상 호 (주요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영문 / 한국)	
2. 생산자	상 호 (대표인명)	상 호 (주요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영문 / 한국)	
물 품 명 세				
3. 품명/국적	HS No.			
4. 품목가	가액표기 (단위)	FOB ()	Ex-Works ()	5. 원산지 결정기준
7. 주요생산소재				
물 재 조 명 세				
국적명	9. 재조명	10. HS No.	11. 원산지	12. 가 격
1			수 입	가 격
2				
3				
14. 합 계				
원산지결정기준 검토				
15.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예	아니오	16. 세관발행기준 충족여부	예
17. 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	예	아니오	(부가가치비율 : %)	
18. 세관발행기준 충족여부	예	아니오	19. 세관발행기준 충족여부	예
20. 노동력기준 충족여부	예	아니오	21. 역외가치기준 충족여부	예
22. 가격기준 충족여부	예	아니오	23. 기타	예
24. 원산지 결정	충족 ()		불충족 ()	
() 자유무역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관한 관세법의 목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작성, 제출합니다.				
작성 일자 : (서명)				
상 호 및 주 소 :				
작성 일자 :				

번호	가계항목	작성요령
1	수출자	수출물품의 실제 수출한 자의 회사명, 사업장등록번호, 비로가 설명, 원산지 및 역외부호, 역외부호(역외부호 포함)를 적습니다.
2	생산자	수출물을 수출한 국가에서 실제로 생산한 자의 회사명, 사업장등록번호, 비로가 설명, 원산지 및 역외부호, 역외부호(역외부호 포함)를 적습니다. 생산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에 적습니다.
3	품명/국적	품명의 품명, 모델명, 규격 및 상표명 등을 적습니다. (예시) 유비폰 : Samsung MX-2700 : acorall
4	HS No.	품명 및 품종의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5	품목가	가액표기 : 본산인도가격 표기인 경우에는 FOB, 총장도(가액표기) 표기인 경우에는 Ex-Works에 "C" 표기합니다. (예시) 유비폰 : Samsung MX-2700 : acorall
6	원산지결정기준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적용한 기준을 적습니다. (예시) 세관발행기준을 적용한 때에는 "세관발행기준"을,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한 때에는 "부가가치기준"을, 역외부호기준과 역외부호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는 조일기준을 적용한 때에는 "조일기준"으로 적습니다.
7	주요생산소재	수출물품의 주요 제조소재 및 원재료명 등을 적습니다. (예시) 전자제품 수입품에 포함된 부품의 주요 제조소재는 경우 ① 리튬 : 만시 85%, 당해사 15%로 명의를 표시(3mV100A) ② 납 : 만시 85%, 당해사 15%로 명의를 표시(3mV100A) ③ 기타 : 만시 85%, 당해사 15%로 명의를 표시(3mV100A) ④ 기타 : 만시 85%, 당해사 15%로 명의를 표시(3mV100A)
8	원산지	수출물품의 원산지에 사용된 원재료의 원산지명칭을 적습니다.
9	세도명	수출물품의 원산지에 사용된 원재료의 품명명칭을 적습니다.
10	HS No.	원재료의 품명명칭을 적습니다.
11	원산지	원재료의 원산지를 적습니다.
12	가 격	수출물품의 원산지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량과 가격을 적습니다. 다만, 그 품종이 세관발행기준, 역외부호기준, 역외부호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13	종류명 (종류명)	원재료의 품종명칭(종류명)의 상호, 주 소, 전가주 소, 전가번호 및 역외부호를 적습니다.
14	합 계	제조 중 원재료(역외부호)와 역외부호(수입산)의 가격과 그 합계액을 적습니다.
15-23	원산지결정기준	수출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에 적용된 기준의 충족여부를 표기합니다. (예시)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할 경우 "예"로 표기합니다. "예"일 경우 "예"로 표기할 경우 세부 내역을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24	원산지결정	이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충족"에, 불충족하는 경우에는 "불충족"에 "O"를 표기합니다.

원산지소명서 작성 예시



인도로 물품을 수출하는 업체의 작성사례
(한-인도(CEPA)자유무역협정 적용)

물 품 명 세						
3.품명/규격			4.HS No	3810.90		
5.물품가격	가격조건	FOB (○), Ex-Works ()		6.원산지 결정기준	조합기준(CTSH+RVC35%)	
	금 액	USD 6840				
7.주요생산공정	1. 2. 3. 4. 5.포장공정 6.제품					
원 재료 명 세 서						
8.연번	9.재료명	10.HS No.	11.원산지	12.가 격		13.공급자 (생산자)
				수 량	가 격	
1			미상	1,980kg	₩2,476,980	
2			한국	468kg	₩650,520	
3			미상	468kg	₩641,628	
4			한국	495kg	₩287,100	
5			미상	495kg	₩310,860	
14 합 계		원산지재료(국산)		₩937,620		
		비원산지재료(수입산)		₩3,423,468		
		합 계		₩4,361,088		

1. 대상국 및 품목확인

협정대상국, 양허품목인지,
수출하는 제품의 HS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등을 먼저확인.

2. 원재료 구입경로 확인

원산지 결정시 기초가 되는 생산과정,
재료내역 및 원재료의 구입경로,
구입가격등을 확인.

3. 품명, 규격, 수량등 확인

수출신고필증, INVOICE,
PACKING LIST 등을 근거로 작성.

원산지소명서 작성 예시



원재료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소요부품 및 제조원가 계산서(BOM)가 필요.

소요부품 및 제조원가 계산서 (Bill of Materials)

원제품 품명/규격 : AL-FLUX

[작성자]업체명/담당부서 : (주)OOO/영업부

담당자 : 강호동 (인)

Part No	부품명/규격	원산지	수량	단가	가격소계	제조사	구매처	연락전화	확인자
1		중국	11kg	₩1,251 /kg	₩1,376	도요타	MBC		
2		한국	0.26kg	₩1,390 /kg	₩361	현대	SBS		
3		미국	0.26kg	₩1,371 /kg	₩356	소니	KBS		
4		한국	0.275kg	₩580 /kg	₩159	삼성	YTN		
5		중국	0.275kg	₩628 /kg	₩173	대우	MINET		
6									
7									
소요부품합계					₩2,425				

부품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수율 : 50%

	부품원가	직접경비	간접경비	제조원가	이윤	판매가
가격(원)	₩2,425	₩817	₩700	₩3,242	3%	₩4,060
주요내역	원재료	노무,제조비	판매관리비			

BOM 및 제조원가계산서 작성

1. 품목별 BOM자료 작성

- ◎ 각 원재료에 대한 구매증빙서류로 단가 계산
- ◎ 재료의 구매 경로별 원산지 판정
- ◎ 광비 및 판매가 산출부분 등이 BOM상에 표시 되도록 작성
- ◎ 작성자 정보 및 공급자 정보 기재
- 원산지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시스템에 의해 작성——

2. 제조원가계산서 자료 작성

- ◎ 제품 및 재료의 협정에서 정한 기각요소를 반영하여 작성(ex: EXW, FOB등)
- ◎ 재료비 산정시, 원산지 구분 없이 직접 수입재료는 신고서상 관세가격, 국내 구매 원재료는 국내 최초 확인 가격으로 산정
- ◎ <참고> 가격구성요소

가격구성요소						
FOB 가격	판매 가격 (selling price) = EXW 가격	총원가 (Total Cost)	제조 원가	직접제조비	원산지 재료비	
				직접재료비	비원산지 재료비	
				직접노무비	가계직접/생산라인 투입 노동자 임금	
				직접제조경비	외주가공비, 로열티 등	
				간접제조비 (manufacturing overhead cost)	보조재료비, 공장소모품비, 소요성 공구 기구비, 운반비 등	
				간접제조경비	감가상각비, 보험료, 통신비, 복리후생비, 조세공과금, 공장임차료, 수전료, 가스료, 전력비, 수도료, 보편료, 제고감모비, 할비 등	
				간접노무비	간접직접임금, 간접공임금, 휴업임금, 급여, 종업원급여수당, 퇴직급여 등	
			판매관리비			
		이윤(Profit)				
내륙운송비 + 창고료 + 통관비 + 선적비						

VI 원산지보관대상 서류

수출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문 서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대장	
원산지증명서 사본(전자문서 포함)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 사본(전자문서를 포함)	
수출신고필증	서류보관기간 수출자: 수출신고 수리 일부터 5년 한-아세안 3년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수출거래계약서	
당해 물품의 생산관련 증빙서류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구입관련 증빙서류	
원가계산서	
원재료내역서(FORMULA) 및 공정명세서	
해당물품의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원산지(포괄)확인서 수취내역	
공급업체로부터 수령한 원산지(포괄)확인서	
기타 원산지 판정을 위해 사용한 자료 및 그 결과물	

생산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문 서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대장	
원산지증명을 위해 작성·제공한 서류	
수출자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서류보관기간 생산자 : 원산지증명서류 를 작성한 날부 터 5년
당해 물품의 생산관련 증빙서류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구입관련 증빙서류	
원가계산서	
원재료 내역서(FORMULA) 및 공정명세서	
해당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원재료원산지확인서 수취대장	
공급업체로부터 수령한 원재료원산지확인서	
기타 원산지 판정을 위해 사용한 자료 및 그 결과물	

수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문 서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 포함)	
수입신고필증	서류보관기간 수입자 : 수입신고 수리 일부터 5년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수입품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자료	
수입물품의 국제운송에 관련한 자료	
사전심사서 사본 및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사전심사서를 받은 경우에 한함)	

VII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원산지 결정예시

2단위(CC) 세번변경기준 예시

제품: A 스낵류
적용협정: 한-아세안 FTA
HS code: 1905.90
원산지결정기준: Change to subheading 1905.90 from any other Chapter

BOM(Bill of Materials) 및 원산지판정

품명(재료명)	세번부호	원산지
A	1101.00	미국
B	1517.90	프랑스
C	1701.99	중국
D	0408.99	덴마크
E	2008.11	호주
F	2501.00	불가리아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의 HS와 완성된 제품의 HS의 2단위가 변경되었으므로 원산지 충족

4단위(CTH) 세번변경기준 예시

제품: AA 소스
적용협정: 한-EU FTA
HS code: 2103.90
원산지결정기준: Manufacture from materials of any heading.

BOM(Bill of Materials) 및 원산지판정

품명(재료명)	세번부호	원산지
A	1701.99	미국
B	3913.90	프랑스
C	3302.10	중국
D	0904.22	덴마크
E	0904.12	호주
F	2106.90	불가리아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의 HS와 완성된 제품의 HS의 4단위가 변경되었으므로 원산지 충족

6단위(CTSH) 세번변경기준 예시

제품: BB 해바라기씨유
 적용협정: 한-페루 FTA
 HS code: 1512.19
 원산지결정기준: A change from any other subheading..

BOM(Bill of Materials) 및 원산지판정

품명(재료명)	세번부호	원산지
A	1512.11	미국
B	1206.00	프랑스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의 HS와 완성된 제품의 HS의 6단위가 변경되었으므로 원산지 충족

부가가치기준 실무예시

제품: OO 혼합주스
 적용협정: 한-칠레 FTA
 HS code: 2009.90
 원산지결정기준: Regional value content of not less than 80% when the build-down method is used.

BOM(Bill of Materials) 및 원산지판정

품명(재료명)	세번부호	원재료가격	원산지
A	1701.99	50	한국
B	2009.19	70	한국
C	2009.31	30	미국
D	2009.71	50	한국
E	2009.50	100	한국



총 재료비: 300원
 공장도가격(Ex-works 가격): 450원
 FOB 가격: 600원

비원산지 재료비

$$\frac{600 - 30}{600} = 95\%$$

역내부가가치비율이 공제법 기준으로 95%이상이므로 원산지기준 충족

미소기준 사례예시(비원산지재료 10%이하 허용)

적용협정: 한-아세안 FTA
 제품: A 과자류 제품
 FOB 가격: 400원
 HS code: 1905.90
 원산지결정기준: CC(2단위 변경기준)

품명(재료명)	세번부호	원산지	가격
A	1701.99	미국	50
B	1901.20	중국	10
C	1517.90	프랑스	40
D	2008.11	덴마크	70
E	2501.00	스위스	30

1905.90
제품 생산

세번변경기준 판정:
 중국산 B 원료의 2단위가 변경되지 않아 **"한국산"으로 불인정**
 아래의 미소기준 적용을 통한 한국산여부 판정

미소기준 적용: 10 / 400 = 2.5%

"한국산"
인정

원산지(포괄)확인서 수취를 통한 부가가치기준 충족 사례

적용협정: 한-칠레 FTA
 제품: AA 주스 제품
 FOB 가격: 600원
 HS code: 2009.90
 원산지결정기준: 공제법 80%이상

품명(재료명)	세번부호	가격	원산지(포괄)확인서 유무	원산지
A	1701.99	50	유	한국
B	1901.20	70	유	한국
C	1517.90	50	무	미상
D	2008.11	100	무	미상
E	2501.00	30	유	한국

2009.90
제품 생산

미소기준 적용: 600-150 / 600 = 75%

**"한국산"
불인정**

원재료 "D"에 대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함으로써 부가가치 비율 충족으로 "한국산" 인정가능

원산지(포괄)확인서를 공급업체로부터 수취

"한국산"
인정

600-50 / 600 = 92%

▶ 조 합 기준 (Other 기준)

적용협정: 한-EU FTA
 제품: 조제식료품
 Ex-works 가격: 600원
 HS code: 2106.90
 원산지결정기준: CTH(4단위변경)+WO(1211.20호 및 1302.19호)+MC 30%(제 4류 및 17류)

품명(재료명)	세번번호	가격	원산지(포괄)확인서 유무	원산지
A	1701.99	60	무	미상
B	3923.10	70	무	미상
C	2501.00	50	무	미상
D	3920.20	100	무	미상
E	1211.20	30	유	한국

2106.90
제품 생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공급업체로부터 미수취
원산지는 "미상"

원산지기준 분석:
 - 4단위 변경기준 여부: 완제품과 원재료의 4단위 변경으로 충족
 - 1211.20호의 원재료 투입시 해당 원재료 완전생산기준: 한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으로 충족
 - 사용된 재료가 4류 또는 17류 해당시 Ex-works 가격의 30% 미만여부: 1701.99호의 원재료가 사용되었으나 MC 10%로써 해당기준 충족

"A"재료의 MC 30%여부 계산 $\frac{60}{600} = 10\%$ "한국산" 인정

▶ 조 합 기준 (한-인도 CEPA)

적용협정: 한-인도 CEPA
 제품: A 통조림 제품
 FOB 가격: 500원
 HS code: 1604.11
 원산지결정기준: CTH+RVC 40%

품명(재료명)	세번번호	가격	원산지(포괄)확인서 유무	원산지
A	0302.11	60	무	미상
B	3923.10	70	유	한국
C	2501.00	60	무	미상
D	3920.20	100	유	한국
E	1701.99	30	유	한국

1604.11
제품 생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공급업체로부터 미수취
원산지는 "미상"

원산지기준 분석:
 - 4단위 변경기준 여부: 완제품과 원재료의 4단위 변경으로 충족
 - 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 역내부가가치비율(RVC)이 76%이므로 부가가치기준 충족

$\frac{500-120}{500} = 76\%$ "한국산" 인정

선택기준 (한-페루 FTA): 세번변경적용

제품: A 사탕과자
FOB 가격: 450원
HS code: 1704.90
원산지결정기준: CTH or RVC 50%(둘 중 어느 하나 기준충족시 "한국산" 인정)
적용: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적용으로 인한 한국산 충족/ 부가가치기준 미충족

품명(재료명)	세번부호	가격	원산지(포괄)확인서 유무	원산지
A	0302.11	140	무	미상
B	3923.10	70	유	한국
C	2501.00	100	무	미상
D	3920.20	60	유	한국
E	1701.99	30	유	한국

1704.90 제품 생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공급업체로부터 미수취 원산지는 "미상"

원산지기준 분석:
- 4단위 변경기준 여부: 완제품과 원재료의 4단위 변경으로 충족
- 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 역내부가가치비율(RVC)이 47%이므로 부가가치기준 미충족

$\frac{450-240}{450} = 47\%$

"한국산" 불인정

선택기준 (한-페루 FTA): 부가가치기준 적용

제품: A 사탕과자
FOB 가격: 450원
HS code: 1704.90
원산지결정기준: CTH or RVC 50%(둘 중 어느 하나 기준충족시 "한국산" 인정)
적용: 4단위 세번변경이 미충족으로 "한국산" 불인정/ 부가가치기준은 충족

품명(재료명)	세번부호	가격	원산지(포괄)확인서 유무	원산지
A	0302.11	90	유	한국
B	3923.10	100	유	한국
C	2501.00	40	무	미상
D	3920.20	60	유	한국
E	1704.90	110	무	미상

1704.90 제품 생산

"4단위 미변경"으로 불충족 부가가치비율로 판정적용

원산지기준 분석:
- 4단위 변경기준 여부: 완제품과 원재료의 4단위 미변경으로 불충족
- 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 역내부가가치비율(RVC)이 67%이므로 부가가치기준 충족

$\frac{450-150}{450} = 67\%$

"한국산" 인정

aT Focus

2011. 1. 28 창간

발 행 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발 행 일 : 2012년 6월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문 의 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식품수출정보팀
02) 6300-1393, 1399 / info1@kati.net

본 자료는 KATI(www.kati.net) > 무역정보 > 발간책자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aT Focus** 6월호 내용은 우리공사(aT)가 최근 실시한 FTA원산지증명 지역별 순회교육 자료로 관세법인 형도(☎ 02-2661-7807)에서 제공하였습니다.